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방부부령 제 호

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의신청 결정 통지서

접수번호		결정일자	
청구인	성명		
	소속 / 직급(호봉)		
	주소		
	이의신청 사유		
결정주문		결정내용	

귀하의 이의신청이 위와 같이 인정[]・부결[]되었음을 통지합니다.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행정심판 또는 행정쟁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(原處分: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)을 대상으로 하고,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2)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(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- 3)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).
- 3)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(「행정소송법」 제9조).

국 방 부 장 관 직인

